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69,760,238	59,092,807
일반회계	1,717,251,477	51,517,544
특별회계	252,508,761	7,575,263
공기업특별회계	188,141,129	5,644,23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8,929,749	867,8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260,447	2,137,81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7,950,933	2,638,528
기타특별회계	64,367,632	1,931,029
주택사업특별회계	200,287	6,009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553,702	166,61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65,819	16,975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010,328	120,310
교통사업특별회계	18,520,726	555,622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2,860,324	985,81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656,446	79,69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98,21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